

[상세보기 #3] 신입직원 가산점(우대사항) 세부사항

1. 특별우대 가산점

대상	해당자	가 산 점 수	비 고
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등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각 전형별 만점의 5%또는 10%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등 적용
장애인	「장애인복지법」 등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	서류, 필기, 면접전형 각 전형별 만점의 10%	
국민기초 생활수급자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	서류전형 만점의 5%	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
이전지역(경남) 인재	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이전지역 인재	서류전형 만점의 5%	대학교(학사, 전문학사) 이하 학력 기준

*모집분야별 선발인원이 3명이하일 경우는 관련법령 등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 미부여

2. 일반우대 가산점

대상	해당자	가 산 점 수	비 고
자격증	고급자격(사무직), 건축사 및 기술사(기술직)	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10%, 면접전형 만점의 5%	· 고급자격 : 공인회계사, 공인노무사, 세무사, 변호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국제재무분석사(CFA 3차 통과자) · 모집분야 기술사 및 기사 등 자격증 목록(상세보기 #4)
	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	서류전형 만점의 3%	
	기사(기술직)	필기전형 만점의 10%	
수상경력	공사 주최 공모전 수상자	서류전형 또는 필기전형에 공모전 시행시 공지된 인센티브 부여	-

3. 청년인턴 가산점

대상	해당자	가 산 점 수	비 고
청년인턴	탁월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	서류전형 면제	2016년 이후 LH근무 인턴만 해당
	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	서류전형 만점의 3%	

4. 우대사항 적용시 유의사항

- 특별우대 가산점은 지원서에 모두 기재하고 가산점은 해당 전형단계별로 가장 유리한 1개만 인정함
- 일반우대 가산점은 대상(자격증, 수상경력)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며 대상별(자격증, 수상경력)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
- 특별우대가산점, 일반우대가산점, 청년인턴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